



비영리조직회계기준

2018. 7. 9.

KAI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W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 I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개요
- II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의 기본 접근방법
- III 제1장 총칙
- IV 제2장 재무상태표
- V 제3장 운영성과표
- VI 제5장 자산부채의 평가
- VII 제6장 주식

※ 참고

1.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비교
2.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의 비교

I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개요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배경, 제정 경과

사회적 요구

-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을 일반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재무보고채널 미흡**
- 비영리조직의 **회계 투명성 확보, 기부문화 활성화** 필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필요성

- 회계기준 사각지대 제거
-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 제고
- 재무제표 공시 제도,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토대 제공

기준의 제정 경과

- **2013.3월~5월:** 기준원 전담팀 신설, 기준 제정 기본 방향 제시, 기준 제정 착수
- **2013.6월~12월:** 전문위 조직, 현장방문· 테스트, 기초안· 공개초안 발표, 의견수렴
- **2014.10월:** 외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근거 법제화 포함)
- **2014년~2016년:** 연구보고서(비영리기준 제정 기본원칙) 발간, 회계기준위원회 심의
- **2016년:** 외감법 전부 개정안에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법제화 제외(규제개혁위원회 철회권고)
- **2017.7월:** 회계기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기준 발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구성, 지위, 시행일

기준의 구성

- **총 6개 장(chapter), 52개 조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재무상태표
 - 제3장 운영성과표
 - 제4장 현금흐름표
 - 제5장 자산·부채의 평가
 - 제6장 주식
- **적용사례**(재무제표 양식 제시) 포함

기준의 지위

- 비영리조직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과는 다른 기준
 -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2003년 기준원 발표)은 2019년 1월 1일자로 폐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대체

기준의 시행일

- **2018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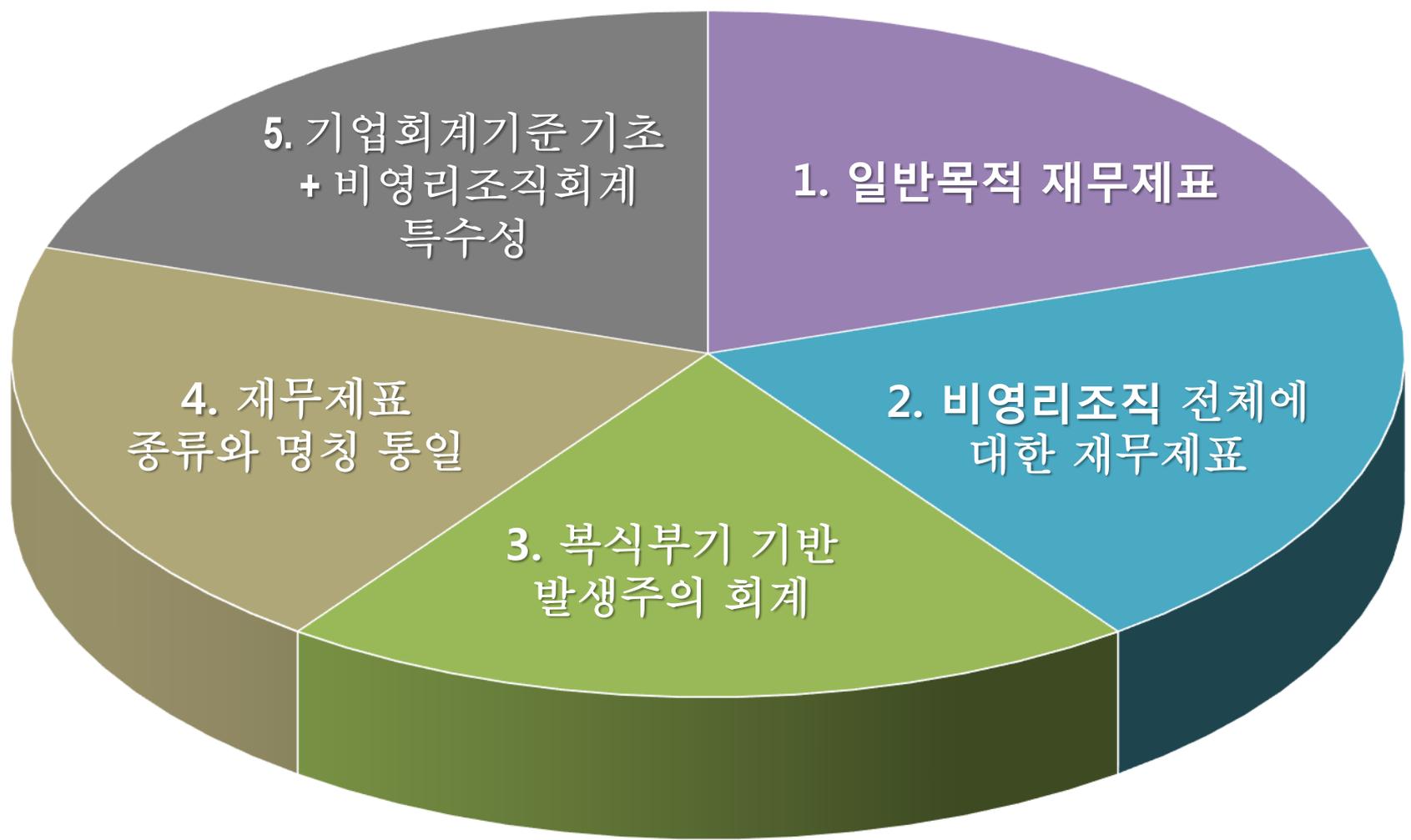
II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의 기본 접근방법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의 기본 접근방법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의 기본 접근방법

1. 일반목적 재무제표 제1조, 제2조, 제5조

■ **현황:** 감독기관의 정보 수요 충족 목적, 상세하고 복잡한 형식의 재무제표

■ **제정관점:** 일반 정보이용자에게 비영리조직 활동의 전반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 사항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간단 명료한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기준 제시

구분	회계규칙	근거법률
사학기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립학교법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의료법
학술장학기관	N/A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단체	N/A	N/A
종교단체(기독교)	교회회계와 재무처리기준	N/A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의 기본 접근방법

2. 비영리조직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 제3조, 제51조

- **현황:** 감독기관 감독 목적이나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복수 회계단위로 구분

- **제정관점:** 일반 정보이용자에게 이해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조직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 제공

3. 복식부기 기반 발생주의 회계 제4조

- **현황:** 다수 비영리조직(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이 단식부기 기반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

- **제정관점:** 재무제표 공시용 재무보고를 위해서는 복식부기 기반의 발생주의 회계 채택이 불가피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의 기본 접근방법

4.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 통일 제6조

▪ **현황:** 재무제표 종류가 업종별로 상이, 업종간 재무제표 비교 어려움

▪ **제정관점:**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식으로 통일

사학기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술장학기관	공익법인(상증법)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부속명세서 주기, 주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기타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5. 기업회계기준 기초 + 비영리조직회계 특수성 제7조

▪ **현황:** 회계규칙을 정하는 법규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거나, 기업회계기준 참조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회계처리 중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에 기초

▪ **제정관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표시 기준', '비영리조직회계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만 상세히 규정, 그 밖의 회계처리는 대략적 원칙(예: 발생주의, 손상)만 제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기준)을 참조하도록 함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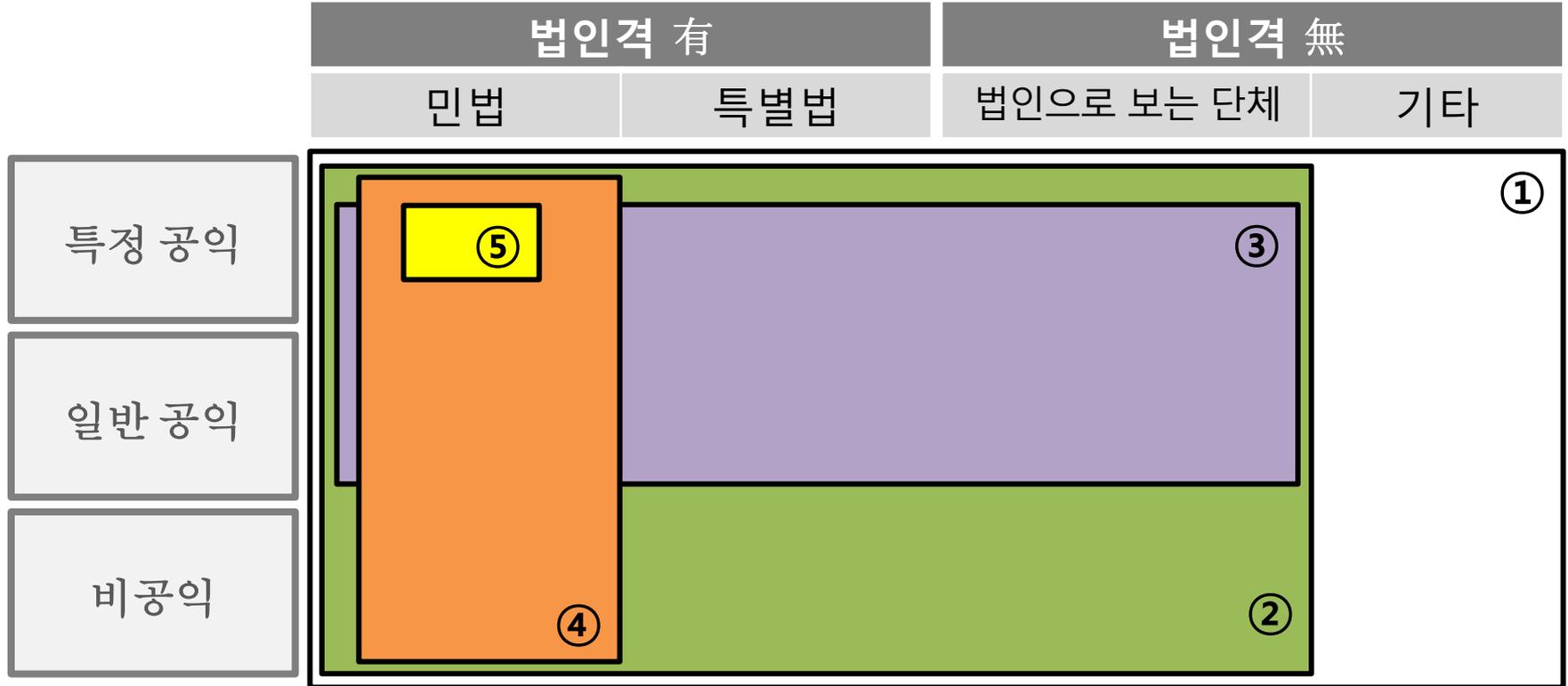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제1장 총칙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제2조

- **현황:** 각 법률에 따른 비영리조직의 범위가 상이함



* ① 일반적 정의, ②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④ 민법상 비영리법인,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기준]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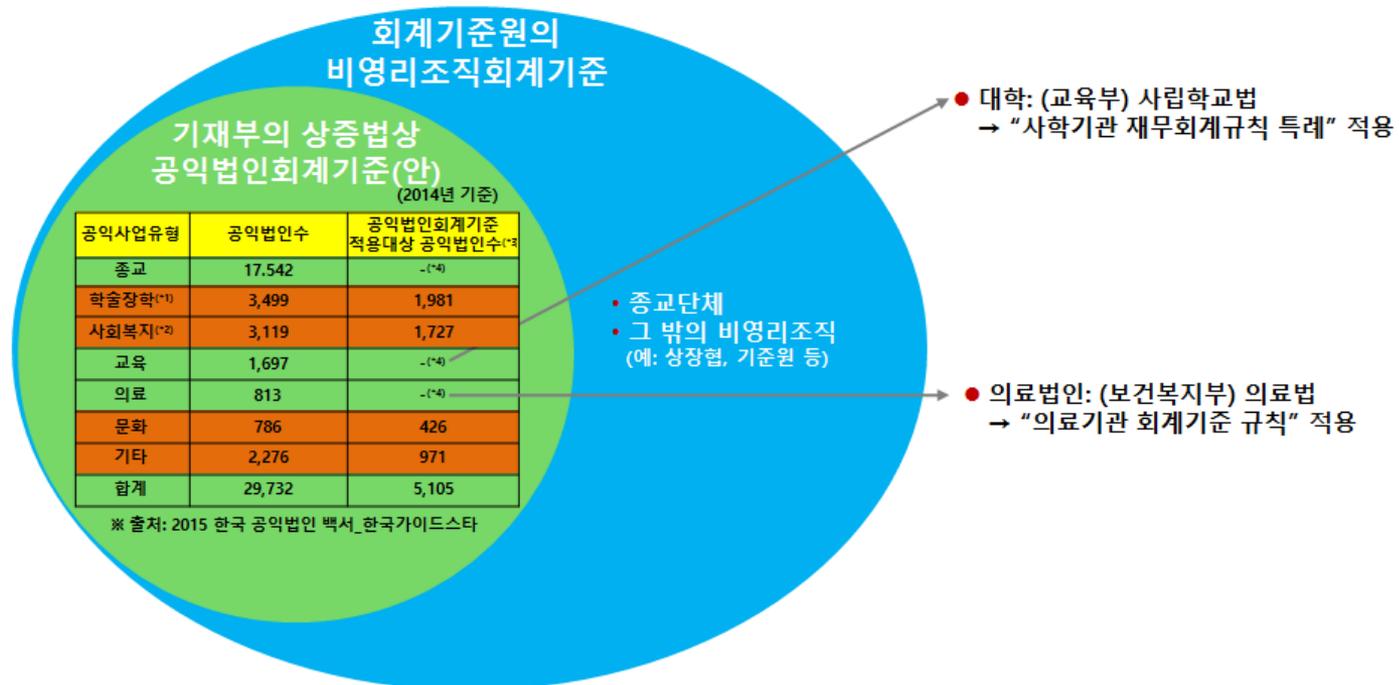
- 비영리특성을 갖는 모든 조직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범위를 '일반적 정의'에 근거

※ 참고: 기획재정부의 상증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

- **문제점:**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 외부 회계감사 등을 의무화 하고 있었지만,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 회계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할 표준 회계기준이 없었음
- **개선안:**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
- **일정:** '17년 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공표하고, '18년부터 적용*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6.7.28., '16.8.30.)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범위 비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지급사업, 학술·자선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3) 결산서류공시 의무대상(총자산≥5억 or 수입금액≥3억), 회계감사 의무대상(총자산≥100억)
 (*4) 종교단체, 대학, 의료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금흐름표 작성 여부 제6조, 제40조

- **현황:** 관련 회계규칙(법령)에 따라 현금흐름표 작성이 요구되는 비영리조직은 의료기관뿐임
 - 의료기관: 영리기업과 동일한 양식 제시
 - 사학기관: '자금계산서'(자금 수입과 지출 예산을 실제 수입과 지출 내용과 대비하여 표시) 사용
 - 사회복지법인: '수지계산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융합된 형태) 작성

[기준]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포함

- 부담 경감 조치: 소규모 비영리조직의 작성 부담과 정보 편익을 함께 고려하여 **수지계산서로 현금흐름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이나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

IV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제2장 재무상태표



- **현황:** 비영리조직마다 순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

[기준] 사용 목적 또는 기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순자산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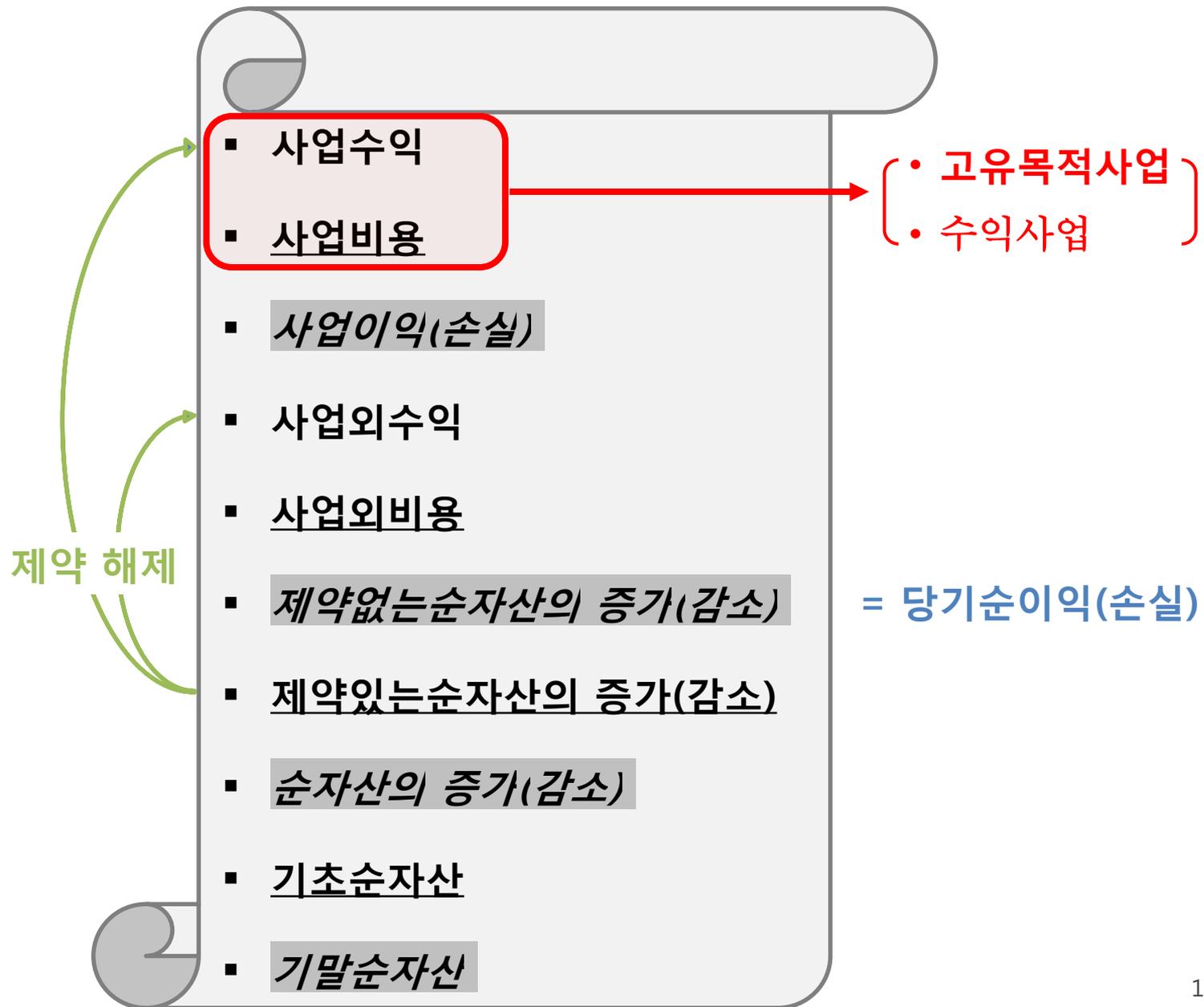
- ① **제약없는순자산**
- ② **제약있는순자산:** 기부자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나 처분이 제약된 순자산
- 비영리조직의 관행 고려, **명칭, 순서, 세분화** 등은 융통성 있게 적용 가능
- 구분된 순자산은 더 세분하여 본문이나 주석에 나타낼 수 있음
 - **일시제약:** 특정 비용 집행에만 사용,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특정 기간 보유,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그 내용연수에 걸쳐 보유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영구제약:** 토지를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경우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제3장 운영성과표





기부금 등의 수익인식 제27조

■ 현황

- 현금 기부금, 회비 등은 실무에서 대체로 현금주의로 인식
- 비현금 기부금(현물, 서비스)은 그 인식 여부나 측정에 실무적 다양성 존재

[기준] 수익 인식시점

- 현금 기부금: 받는 시점에 수익 인식 (현금주의)
-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과 미수금) 인식 (발생주의)
- 현물 기부: 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로 수익 인식
- 서비스 기부: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 일반인의 무료 봉사활동, 무상 제공 전문가 용역: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워 수익 인식 대상 제외

[기준] 수익의 표시

- 사업수익
- 제약이 있는 경우,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

- **현황:**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정한 정부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자산관련 보조금: 관련 자산 취득 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

수익관련 보조금: 당기손익에 반영. 특정 비용 보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준용 배제

- **사업수익**
- **제약이 있는 경우,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

* 정부보조금도 비영리조직의 중요 재원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면 관련 비용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여 비영리조직의 활동 노력과 성과가 과소 평가되는 문제점 고려

기능별 비용 보고 제29조

- **현황:** 비영리조직의 비용 보고에 예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사용(성격별 비용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 정보이용자에게는 비영리조직의 활동 노력과 성과를 충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능별 비용 구분 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음

[기준] 고유목적사업비용 기능별 구분: 운영성과표 본문 기재

- **사업수행비용:** 비영리조직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일반관리비용:**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모금비용
- **모금비용:**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요한 경우, 일반관리비용과 구분 표시 가능**

문화예술단체	사립대학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술장학기관
· 공연	· 강의	· 여성복지	· 환자진료	· 목회	· 멘토링
· 전시	· 연구	· 노인복지	· 연구	· 교육	· 배움터지원
	· 학생서비스	· 장애인복지		· 자선	· 글로벌장학
∴	∴	∴	∴	∴	∴

[기준] 고유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주석 기재

- **인력비용:**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 **시설비용:**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 **기타비용:**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

[주석]

기능별 비용을 다시 성격별로 분석

기능별 비용	구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 모금비용이 중요하여 일반관리비용과 구분되어 표시되는 경우를 가정함

▪ 기능별 비용 보고로 예상되는 개선 효과

- 일반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의 사업 수행의 효율성, 효과성 평가에 도움:
이들은 사업수행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때 그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효율적,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통일된 형식의 기능별 보고로 비영리조직 간에 비교가 가능해짐
 - 성격별 비용 보고: A법인과 B법인 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함
 - 기능별 비용 보고: 일반 정보이용자들은 B법인이 사업수행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을 알게 되므로 어느 법인에 기부할지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음

성격별 비용 보고

비용	A법인	B법인
인력비용	12,000	12,000
시설비용	6,000	6,000
복지지원금	4,000	4,000
복지강좌비	4,000	4,000
총계	26,000	26,000



기능별 비용 보고

비용	A법인	B법인
사업수행비용		
노인복지	9,000	9,500
장애인복지	7,000	11,500
소계	16,000	21,000
일반관리비용	5,000	2,500
모금비용	5,000	2,500
총계	26,000	26,000

순자산 구분별 수익과 비용 집계 📖 제25조, 제34조

[기준] 순자산 구분 단위별 수익 비용 집계, '제약없는순자산의 증가(감소)'와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감소)로 구분 표시

- 제약있는순자산이 별도로 없으면 제약없는순자산의 증가(감소)만 표시 가능
- 제약없는순자산의 증가(감소)는 '당기순이익(손실)'로 표시 가능

사업/사업외 항목 구분 📖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 **현황:** 수익과 비용을 사업항목과 사업외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관행

[기준] 수익과 비용을 사업항목과 사업외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

- 이자수익,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이 사업수익에 포함된 경우(고유목적사업활동 주된 원천)나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감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업외항목에서 제외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제26조, 제29조

- **현황:** 비영리조직 회계 관련 법규에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경리를 공통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회계관행으로 유지

[기준] 사업수익(비용)을 고유목적사업수익(비용), 수익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합산, 사업수익과 사업비용 내에 별도 표시

[주석]

구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고유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 모금비용이 중요하여 일반관리비용과 구분되어 표시되는 경우를 가정함

법인세비용 제33조

- **현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비영리조직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기준] 법인세 회계처리는 회계정책 개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에서 정하는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법인세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
- *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등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법인세 비용 인식
- 법인세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현황:** 세법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 감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표시하려는 유인* 존재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재무제표에 비용 표시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처분 형식으로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도 가능. 다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기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그 전입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함

- 재무회계 개념체계상 부채와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VI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제5장 자산· 부채의 평가



유형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제45조

- **현황:**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은 유형· 무형 자산에 (감가)상각을 하나 (기업회계 원칙과 일관), 일부는 취득과 동시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여 부외자산으로 갖는 경우도 있음

[기준] 감가상각비, 상각비 인식

-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각비**를 재무제표에 반영
- 다만, 전시, 교육, 연구 등 목적으로 보유 중인 **예술작품, 유물 등은 제외**(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음)

유형자산의 재평가 제46조

- **현황:**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와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31조) 등에 유형자산 재평가의 근거가 마련

[기준]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 비영리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재평가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투자유가증권의 표시와 평가 제15조 제47조

- **현황:** 학술장학기관, 사학기관 등에서는 상당액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음. 후속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조직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조직이 있음

[기준] 투자유가증권 구분 정보

- 투자유가증권을 구분하는 정보(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주식)를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

[기준] 공정가치 평가, 취득원가 평가

- 공정가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투자유가증권(예: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그 밖에는 **취득원가**로 평가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취득원가와 비교하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주석]	공정가치	취득원가	재무상태표 표시금액
국공채		XXX	XXX
공정가치 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 평가분		XXX	XXX
회사채		XXX	XXX
공정가치 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 평가분		XXX	XXX
수익증권		XXX	XXX
공정가치 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 평가분		XXX	XXX
주식		XXX	XXX
공정가치 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 평가분		XXX	XXX
투자유가증권 합계		XXX	XXX
공정가치 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 평가분		XXX	XXX

VII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제6장 주식



- **현황:** 비영리조직이 작성하는 감독 목적 재무제표에는 주석이 없으나 투자유가증권, 유형·무형 자산, 장기·단기 차입금 등 주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 부속명세서 첨부

[기준]

①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설명, 세분화, 분석 정보:** 재무제표 이해에 도움
 - (예) 설명 정보: 순자산 분류를 다르게 명명할 경우, 그 내용
세분화 정보: 순자산의 각 분류별 세부항목, 투자유가증권을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주식으로 구분한 정보, 고유목적사업비용 중 사업수행비용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정보
분석 정보: 고유목적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정보를 성격별로 분석한 정보
- **비영리조직의 개황이나 주요 사업 내용:** 재무제표 전반의 이해에 도움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거래나 회계사건으로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보를 제공
 - (예) 계류중인 소송이나 담보·보증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주석기재사항 중** 비영리조직에 **관련성**이 있고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② 선택적 주석기재사항

- 재무제표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에 필요한 정보는 작성자의 판단으로 주석에 기재 가능
 - (예) 감독목적이나 내부관리목적으로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나 일부, 제약있는순자산을 일시제약과 영구제약으로 구분한 정보



① 회계기준

제정개정과제

회계질의

연구

자료실

소통광장

한국회계기준원 안내

회계교육포털 >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국제회계기준(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전문

비영리조직회계기준

☰ > 회계기준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보고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조직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활발한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입니다. 2017년 7월 20일 제정 의결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지지만, 비영리회계실무에 점진적으로 수용,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등록일 [] ~ [] 제목 [] 검색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2	비영리조직회계기준 해설서		2017-07-24
1	비영리조직회계기준		2017-07-24

참고1.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분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의 목적	비영리조직이 일반목적 재무제표 를 작성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 (제1조)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 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 에 관한 기준을 정함 (일반기준 문단1.1)
정보 이용자	기부자, 회원, 채권자 및 비영리조직에 자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주체 (제5조)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이용자 (경영자, 재무분석가, 신용평가기관,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일반대중) (개념체계 문단12)
재무보고의 목적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조직이 제공한 서비스, 지속적 서비스 제공가능성 및 관리자의 관리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개념체계 문단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하고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
법적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원 정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정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적용 대상	법인적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 (제2조)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는 기업 (일반기준 문단1.3)
재무제표	제6조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현금흐름표 ④ 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가 융합된 형태를 취함 ** 수지계산서로 갈음 가능 	일반기준 문단2.4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자본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제12조)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개념체계 문단 104),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일반기준 문단 결24)

참고1.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분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순자산 구분	<p>제12조, 제21조, 제22조</p> <p>① 제한없는순자산 ② 제한있는순자산</p> <p>* 기부자나 법령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이 제약된 순자산으로서, 특정 비용을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특정 기간 보유하거나, 경제적 내용연수가 유한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그 내용연수 동안 보유·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일시제한) 또는 토지를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영구제한)</p>	<p>일반기준 문단 결2.6</p> <p>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p>								
구분경리	<p>운영성과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구분경리가 요구됨 (제26조, 제29조)</p>	<p>기업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단위로 하므로 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p>								
정부보조금 수익인식	<p>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수익으로 표시(제28조)</p> <p>* 제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한있는순자산'으로 표시</p>	<p>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한 후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일반기준 문단17.5), 수익관련 보조금은 당기수익으로 인식하되 특정비용 보전목적이면 해당 비용이 발생할 때 차감함(일반기준 문단17.6)</p>								
사업(영업) 비용의 표시방법	<p>고유목적사업비용은 기능별로 구분한 비용을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고, 각 구분비용에 대해 다시 성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제29조)</p> <table border="1" data-bbox="405 1063 859 1220"> <thead> <tr> <th>기능별 비용 (운영성과표 본문)</th> <th>성격별 비용 (주석)</th> </tr> </thead> <tbody> <tr> <td>① 사업수행비용</td> <td>① 인력비용</td> </tr> <tr> <td>② 일반관리비용</td> <td>② 시설비용</td> </tr> <tr> <td></td> <td>③ 기타비용</td> </tr> </tbody> </table>	기능별 비용 (운영성과표 본문)	성격별 비용 (주석)	① 사업수행비용	① 인력비용	② 일반관리비용	② 시설비용		③ 기타비용	<p>영업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시(일반기준 문단2.45)</p> <p>① 매출원가 ② 판매관리비</p> <p>* 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총손익을 산정한 후 이 금액에서 다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정</p>
기능별 비용 (운영성과표 본문)	성격별 비용 (주석)									
① 사업수행비용	① 인력비용									
② 일반관리비용	② 시설비용									
	③ 기타비용									
회계정책의 결정	<p>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책을 결정함(제7조)</p>	<p>일반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회계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할 상세한 지침 제시(일반기준 제5장)</p>								

참고2.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비교

구분	비영리조직회계기준 (‘17.7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03.3월)
제정절차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공표	회계기준위원회에 보고後 회계기준 원장 명의로 발표
재무제표	제6조 ① <u>채무상태표</u> ② <u>운영성과표</u> ③ <u>현금흐름표</u> ④ 주석 * 수지계산서로 갈음 가능	지침서 1의 문단6 ① <u>대차대조표</u> ② <u>운영성과표</u> ③ <u>현금흐름표</u> ④ 주기 ⑤ 주석
순자산 구분	제12조, 제21조, 제22조 ① <u>제한없는순자산</u> ② <u>제한있는순자산</u>	지침서 1의 문단40 ① <u>제한없는순자산</u> ② <u>일시제한순자산</u> ③ <u>영구제한순자산</u>
유동자산	제13조 <u>유동자산</u> <u>당좌자산</u> <u>채고자산</u>	당좌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함(지침서 1의 문단 27, 28)
서비스의 기부	인식하지 아니함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인식(지침서 2의 문단5)
무조건부 기부약정	인식하지 아니함	무조건부 기부약정도 기부에 포함 되므로(지침서 2의 문단3), 현금기부와 마찬가지로 <u>기부받은 시점에 공정 가치로 측정하여 수익으로 인식</u> (지침서 2의 문단4, 15)

참고2.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비교

구분	비영리조직회계기준 (17.7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03.3월)
<p>고유목적 사업비용의 표시</p>	<p>제29조제3항, 제6항 기능별 비용: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 성격별 비용: 주석에 기재</p>	<p>기능별(활동별) 비용표시와 성격별 비용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기능별(활동별) 비용은 운영 성과표 본문에 표시 또는 주석에 기재할 수 있음. 기능별(활동별) 비용을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성격별 비용을 주석으로 기재함(지침서 1의 문단 69)</p>
<p>법인세비용</p>	<p>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정함(제33조)</p>	<p>관련 규정 없음</p>
<p>사업활동 현금흐름 표시방법</p>	<p>직접법과 간접법 둘 중 선택가능 (제40조)</p>	<p>직접법만 제시(지침서 1의 문단84)</p>
<p>유형자산 재평가</p>	<p>재평가 허용(제46조)</p>	<p>관련 규정 없음</p>

Thank You

Korea Accounting Institute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W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